|  |  |  |
| --- | --- | --- |
| **국가외환관리국 경내기구 대외담보**  **관리문제에 관한 통지**  환발[2010]39호, 2010년7월30일  국가외환관리국 각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의 외환관리부, 심천(深圳), 대련(大连), 청도(青岛), 하문(厦门), 영파(宁波)시 분국. 경내 각 외환지정은행 본점:  경내기구 대외담보 관리의 개혁을 심화하고 경내기구가 국제경제 금융합작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경내기구 대외담보 관리방법》(은발[1996]302호)(이하 《‘방법》’)에 근거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은 경내기구 대외담보 제공 관리방식을 진일보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유관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본 통지가 대외담보라 칭하는 것은 경내기구(담보인)가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및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증, 저당 등의 방식으로 경외기구(담보 수익인)에 승낙을 받고, 당 채무인(경내외기구)이 계약 약정에 따라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담보인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수익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의 규정에 따라 저당물을 경매, 매각하여 대금을 우선적으로 보상받는 행위를 일컫는다.  경내기구의 대외담보 제공은, 피담보인이 경외기구이고 담보수익인이 경내기구일 경우, 대외담보 관리로 간주하며, 본 통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통지가 융자성 대외담보라 칭하는 것은 담보항목 하의 주계약에 융자성의 대외담보가있는 것을 뜻하며, 대출, 채권발행, 융자임차 및 국가외환관리국인 인정한 기타 대외담보 형식 등을 가리킨다. (이에 한정되지 않음.)  본 통지가 비융자성 대외담보라 칭하는 것은 융자성 대외담보 이외의 기타형식의 대외담보를 뜻하며, 품질담보, 프로젝트 완공 책임담보, 입찰담보, 전도금(预付)담보, 연불(延期)담보, 화물매매 계약 하의 책임이행 담보 및 국가외환 관리국이 인정한 기타 대외담보 형식을 가리킨다.  본 통지가 기업이라 칭하는 것은 은행, 비은행 금융기구를 제외한, 법에 의해 성립된 비금융기구 법인을 가리킨다.  2. 국가외환관리국은 경내기구의 대외담보 제공에 대해 잔액관리 또는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관리방식을 시행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경내은행의 융자성 대외담보 제공에 대해 잔액관리를 시행한다.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이 제공하는 대외담보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허가를 위주로 하되, 일정 조건을 구비한 경우 잔액관리를 실행한다.  3. 담보업무 경영자격을 구비한 경내은행이 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소재국가 외환관리국 분지국, 외환관리부(이하 ‘외환국’, 그 중 분국과 외환관리부는 ‘외환분국’으로 칭함) 에 대외담보 잔액기준을 신청할 수 있다. 외환국이 심사결정한 기준 내에서 은행은 자발적으로 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외환국에 개별 심사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담보업무 경영자격을 구비한 경내은행이 비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준통제를 받지 않으며, 외환국에 개별 심사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업종 관리감독 부문의 관련 위험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 경내은행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기준 신청 방법을 정해야 한다.  (1) 경내법인은 은행이 법인을 주체로 하여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2) 경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기구의 외국은행 지점은 단독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시행에 대해 집중 관리하는 경내 관련은행 (지점)의 주 보고지점이 통일적으로 기준을 신청할 수 있다.  5. 경내은행은 매년 4월 15일전까지 소재지 외환국에 당해년도의 기준신청을 제기하고, 소재지 외환분국이 종합하여 1차 심사한다.  각 외환분국의 1차 심사 후, 작성한 《XXX년 대외담보 잔액 기준 요구표》(첨부1 참조)와 더불어 외환분국과 각 은행의 신청기준 보고를 종합하여 국가외환관리국 심사비준에 보고하고, 외환분국은 심사비준 받은 기준 심사결정을 은행에 제공한다.  당해년도 기준 심사결정 전에는, 작년도 기준이 계속 유효하다. 당해년도 기준이 조정 감소되는 경우, 은행은 융자성 대외담보 잔액 감소조정부터 당해년도 기준범위 이전까지 새로운 대외담보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은행이 처음으로 기준을 신청하는 경우, 요구에 따라 소재지 외환분국을 거쳐 국가외환관리국에 기준 심사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6. 외환국은 주로 은행의 인민폐와 외화를 합친 실제 납입자본, 영업자금 또는 외환 순자산 규모 등에 의거하여, 은행의 기준을 심사결정한다. 외환국은 은행의 작년도 대외담보 계약이행과 대외담보 규모 현황, 외환관리 규정 심사집행 현황, 당해년도 업무 발전 계획 및 당해년도 국가 국제수지 상황과 정책 조정필요 여부 등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7. 한 은행의 기준은 원칙 상 기본 인민폐와 외화를 합친 실제 납입자본 또는 운영자금의 50% 또는 외환 순자산의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8. 은행이 연도 기준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신청보고 및 《경회기구 대외담보 잔액제공 기준 신청표》(첨부2 참조)  (2) 작년도 합산한 대차대조표와 손익표, 외환자금 출처 및 운용현황표 (만약 초회 신청인 경우 금융업무 허가증, 영업집조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함)  (3) 작년도 대외담보 업무 및 통합규모 현황 (신규 설립된 은행 제외)  (4) 당해년도의 업무 전개계획  (5) 외환국이 요구한 기타 자료  9. 잔액관리를 시행하는 경내은행은 그 기준을 은행이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의 경내 분지기구(기준시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경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외국은행 분지점 포함) 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은행이 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외환국이 심사결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피담보인의 경내기구의 지분권 관계, 순자산 비율과 이윤현황 등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담보 등 유관법률 법규 및 업종 관리감독 부문의 관련 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1. 은행이 비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피담보인 또는 수익인 중 적어도 일방이 경내에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법인이거나, 또는 적어도 일방이 경내기구가 규정에 따라 경외에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기구여야 한다.  12. 은행본점 또는 기준 시행을 집중관리하는 주보고 지점은 적시에 본 점에 대외담보 현황의 전부를 종합하여 보고해야 하며, 매월 최초 5업무일 내에 소재지 외환국에 대외담보 정기 비안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경내은행 대외담보 종합보고 비안표》, 《경내은행 신 체결 융자성 담보 개별 심사허가 비안표》와 《경내은행 융자성 대외담보 계약이행 개별 심사허가 비안표》(첨부 3의 (1),(2),(3) 참조)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은행이 상술한 규정에 따라 비안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등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외환국은 은행에 대외담보 등기 증명문건을 다시 발행하지 않는다.  은행의 경내 분지기구 명의로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분지기구 또한 상술한 요구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관련 데이터를 발송하여 보고해야 한다. 단, 외환국 대외담보 데이터 통계 시스템에 산입하지 않는다.  은행이 기준 내에서 제공한 융자성 대외담보는 외환국 비안만으로는 발효요건이 될 수 없다. 기준을 초과하여 독단적으로 대외담보를 제공한 경우, 《방법》등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 경내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이 대외담보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외환국에 개별적으로 승인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대외담보 업무가 비교적 많거나, 내부관리를 규범화한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외상독자기업 포함)은 그 대외담보(융자성과 비융자성 담보 포함)를 제공할 경우, 본 통지의 제 5조, 8조 규정의 절차를 참고하여, 법인을 주체로 하여 외환국에 잔액기준 심사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결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경내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이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환국에 개별 심사비준 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1) 담보인이 비은행 금융기구 일 경우, 그 기준 심사결정의 근거는 본 통지 제6조, 7조를 참조하여 처리한다.  (2) 담보인이 기업인 경우, 그 순자산과 총자산의 비율은 원칙상 15%보다 적을 수 없으며, 외환국이 기업에 심사결정한 잔액기준 또는 개별심사 승인한 대외담보 잔액은 그 순자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14.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이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이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피담보인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➀ 담보인이 비은행 금융기구인 경우, 피담보인은 반드시 경내에 법에 의거하여 성립한 법인이거나 경내기구가 규정에 따라 경외에 설립 또는 지분보유, 간접적 지분을 보유한 기구여야 한다.  담보인이 기업인 경우, 피담보인은 반드시 담보인이 규정절차에 따라 경내에 설립 또는 지분보유, 간접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➁ 피담보인의 순자산 금액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➂ 피담보인은 최근 3년 중 적어도 1년은 이익이 실현되어야 한다. 만약 피담보인이 자원개발 유형 등 장기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우, 최근 5년 내 적어도 1년은 이익이 실현되어야 한다. 피담보인이 성립 후 3년(일반기업) 또는 5년(자원개발 유형 기업)이 되지 않은 경우, 강제적인 이익 요건은 없다.  경내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비거주 건물을 담보 대출하여 경내은행에 제공한 환매(還買, buy-back)담보는 본 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잔액관리를 시행하는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이 만약 아래의 정황에 속하는 대외담보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외환국에 개별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➀ 제공할 대외담보가 기준 규모, 순자산 액수 및 이익 조건 등의 방면에서 본 통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재지 외환분국을 거쳐 국가외환관리국의 개별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담보목표가 융자성 계약항목 하의 채무상환 의무인 경우, 피담보인의 융자목표는 경외기업(목표기업)의 지분 매입에 쓰인다. 또는 피담보인이 경외기업(목표기업) 지분양도 계약항목 하의 지분 양수인(대금 지불인)이고, 담보목표가 지분양도 계약 항목 하의 지분권 양도 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는 경우, 담보인 소재지의 외환관리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담보인은 국가 경외투자 주관부문에 관련기업(피담보인 또는 그 관련기업)이 경외에 항목 투자 또는 매입에 참여한 비준문건(첨부 4 관련 처리지도 참조)을 제출해야 한다.  외환국의 개별 심사승인을 받은 대외담보는 지표 통제범위에 넣어 관리한다. 지표가 부족한 경우 외환국은 개별 심사승인할 때 그 지표를 조정한다  (3) 잔액관리를 미이행하는 외상독자기업은 일반기업의 관리원칙에 따라 대외담보 개별 심사허가, 개별등기 등 관련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4)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은 대외담보 계약체결 후 15일 내에, 소재지 외환국에 대외담보 개별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잔액관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소재지 외환국은 관련규정에 따라 대외담보인 이외의 기타 자격에 대해 심사허가를 진행하고, 대외담보 등기 증명문건을 발급한다.  15. 경내기구의 대외담보 발생이행 시 아래규정에 따라 유관 이행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은행이 융자성 및 비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할 때 대외 이행이 발생할 경우, 자발적으로 대외담보 이행 항목 하의 대외지불을 처리할 수 있다.  그 대외담보 이행 자금은 자신이 제공한 외환입체(立替)금, 역담보인(反担保人)이 외환 또는 인민폐 형식으로 기탁한 보증금, 또는 채무위약이 발생한 후 역담보인(反担保人)이 지불한 비용에서 나올 수 있다.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의 대외담보 이행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 외환국에 개별 심사허가 심사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그 대외담보 이행 처리 시 외환을 매입할 수 있다.  (2)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구가 담보인이 되고, 그 역담보인은 자발적으로 역담보 대금지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 역담보인은 담보이행 증명문건에 의거하여 은행에 직접 외환 매입 또는 지불 수속을 처리할 수 있고, 담보인은 자발적으로 관련 외환자금의 기장을 처리할 수 있다. 대외담보 항목 하의 재무인이 주동적으로 대외담보 상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무인, 담보인은 자발적으로 각자의 대금 지불/수령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채무인 또는 역담보인이 여러 이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의무를 상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담보인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채무인 또는 역담보인으로부터 결산받은 인민폐 자금을 은행이 채무인을 대리하는 외환 매입/매도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 매입을 처리한다.  (3) 기업이 담보인 또는 제(2)항이 칭하는 역담보인이 될 경우, 그 채무인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소득자금이 외환일 경우 외환관리국 심사비준을 거친 후 대금 결산처리가 가능하다.  16. 경내보험회사가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보고 및 이행은 은행에 따라 관리를 진행하고, 대외담보 이행은 외환국의 허가가 필요 없으며, 제12조에 따라 대외담보 정기비안을 시행한다.  17. 경내기구가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경내기구가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 담보법률 법규 및 업종관리 부문의 담보업무 관련 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위험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2) 경내기구가 대외담보를 제공할 경우 피담보인이 경내외에 설립한 합자기업에 제공하는 대외담보는 경내외기구의 지분투자비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경외투자기업에 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할 경우 담보항목의 자금은 대차, 지분투자 또는 증권투자 등 형식으로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경내로 간접 반입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경내담보인 또는 경외투자기업의 경내 모회사는 피담보인이 취득한 자금을 피담보인의 경외 생산경영활동에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4) 경내기구가 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할 경우 구체적인 업무수요에 근거, 담보의무의 완전한 서술을 전제로 계약에 명확한 담보금액과 기한을 약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외담보 심사허가, 등기, 등록수속 처리 시 외환국 또는 담보인은 담보항목계약에서 담보측 지급의무와 관련도가 가장 높은 금액과 기한을 담보항목의 상관 이행의무 참조금액과 기한으로 정할 수 있으나 담보인의 담보항목 이내 실제지급의무는 참조금액과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대외담보항목의 채무금액은 담보인의 외화수입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  (6) 본 통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외에 경내기구는 《방법》, 《경내기구 대외담보 관리방법 실시세칙》([97]회정발자제10호, 이하 ‘《세칙》’) 및 기타 상관 규정에 따라 대외담보계약, 등기, 변경, 이행,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7) 대외담보항목의 채권/채무양도는 외환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8. 경내기구가 경내 또는 경외기구(채무자)를 위해 경외담보인에게 제공하는 반역담보는 대외담보에 따라 관리하고 역담보를 제공하는 경내기구와 피담보인으로서 경외기구는 반드시 본 통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경내기구가 대외담보규정에 따라 경내 또는 경외기구(채무자)에 대외담보를 제공할 경우 기타 경내기구는 채무자로서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내기구에 역담보를 제공하며 대외담보에 따라 관리하지 않지만 외환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9. 담보인이 대외적으로 저당, 질권 등을 제공할 경우 저당, 질권물 주관부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담보인이 자신의 적법한 대외채무 또는 기타 대외지급의무를 위해 대외저당, 질권 등을 제공할 경우 대외담보 자격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기에 지표관리에 포함시키거나 외환국에 개별 심사허가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소재지 외환국에서 대외담보 정기등록 또는 건별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대외담보이행이 발생한 경우 비은행금융기구와 기업은 외환국에 개별 심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담보인이 제삼자 채무를 위해 저당, 질권을 제공할 경우 특수규정 이외에 자격, 조건 방면에서 제삼자 보증과 동일한 외환관리규정을 적용하다.  20. 외환국은 경내기구의 대외담보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멋대로 대외담보를 제공하거나, 추계지표를 초과하여 대외담보를 제공하거나 본 통지 등 규정에 따라 대외담보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외환국은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당해년도 지표 감소, 잔액관리를 개별 심사허가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상관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대외담보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21. 각 외환분국은 본 통지를 받은 후 조속히 관할구 내 중심지국과 금융기구에 전파해야 한다.  22.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방법》 제5조 제1관, 《세칙》 제21조는 본 통지 발표일부터 집행을 정지한다. 동시에 2005년 8월 16일 공표한 《경내은행이 경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융자성 대외담보 관리방식 조정에 대한 통지》(회발[2005]61호) 등 규범성문 건은 폐지(첨부5 참조)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기타 법규와 본 통지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본 통지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첨부1: 《\*\*\*\*년 대외담보 잔액기준 요구표》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730191352621.xls>  첨부2: 《경내기구 대외담보 제공 잔액기준 신청표》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730191258141.doc>  첨부3: 《경내은행 대외담보 종합비안표》, 《경내은행 신(新) 융자성 대외담보 개별 심사허가 비안표》, 《경내은행 융자성 대외담보 이행 개별 심사허가 비안표》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730191446098.xls>  첨부4: <<경내기구 대외담보 제공 개별 심사허가 신청표>>, <<경내기구 대외담보 개별 심사허가 실시지침>> (요약본)  첨부5: 《대외담보 폐지 문건 명세표》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730192329002.doc> |  | **国家外汇管理局关于境内机构**  **对外担保管理问题的通知**  汇发【2010】39号，2010年7月30日  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境内各外汇指定银行总行：  为深化境内机构提供对外担保管理改革，支持境内机构参与国际经济金融合作，根据《境内机构对外担保管理办法》（银发[1996]302号）（以下简称《办法》），国家外汇管理局决定进一步调整境内机构提供对外担保管理方式。现就有关问题通知如下：  一、本通知所称对外担保，是指境内机构（担保人）根据《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及《办法》的规定，以保证、抵押或者质押等形式，向境外机构（担保受益人）承诺，当债务人（境内外机构）未按照合同约定履行义务时，由担保人履行义务或者由受益人依照《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的规定，将抵押物、质物折价拍卖、变卖的价款优先受偿的行为。  境内机构对外提供担保，如被担保人为境外机构、而担保受益人为境内机构，视同对外担保管理，适用本通知规定。  本通知所称融资性对外担保，是指担保项下主合同具有融资性质的对外担保，包括但不限于为借款、债券发行、融资租赁等提供的担保，以及国家外汇管理局认定的其他对外担保形式。  本通知所称非融资性对外担保，是指除融资性对外担保以外的其他形式的对外担保，包括但不限于质量担保、项目完工责任担保、招投标担保、预付款担保、延期付款担保、货物买卖合同下的履约责任担保以及国家外汇管理局认定的其他对外担保形式。  本通知所称企业，是指除银行、非银行金融机构以外依法成立的非金融机  构法人。  二、国家外汇管理局对境内机构提供对外担保实行余额管理或者逐笔核准的管理方式。国家外汇管理局对境内银行提供融资性对外担保实行余额管理；对非银行金融机构和企业提供对外担保以逐笔核准为主，具备一定条件的可以实行余额管理。  三、具有担保业务经营资格的境内银行提供融资性对外担保，可向所在地国家外汇管理局分支局、外汇管理部（以下简称外汇局，其中分局和外汇管理部简称为外汇分局）申请对外担保余额指标（以下简称指标）。在外汇局核定的指标内，银行可自行提供融资性对外担保，无须逐笔向外汇局申请核准。  具有担保业务经营资格的境内银行提供非融资性对外担保，不受指标控制，无须逐笔向外汇局申请核准，但应符合行业监管部门的相关风险管理规定。  四、境内银行按照以下原则提出指标申请：  （一）境内法人银行须以法人为主体提出申请。  （二）在境内没有设立法人机构的外国银行分行，可单独提出申请，也可由对指标实行集中管理的境内关联银行（分行）的主报告行统一提出指标申请。  五、境内银行应在每年4月15日之前向所在地外汇局提出当年度指标申请，由所在地外汇分局汇总并初审。  各外汇分局初审后，填写《×××年对外担保余额指标需求表》（见附件1），连同外汇分局和每家银行的指标申请报告，集中报国家外汇管理局核准，并由外汇分局将核准的指标核定给银行。  在当年度指标核定前，上年度指标继续有效。当年度指标被调减的，银行在将融资性对外担保余额调减至当年度指标范围以前，不得办理新的对外担保业务。  银行初次申请指标，可根据需要，经所在地外汇分局向国家外汇管理局提出核定指标的申请。  六、外汇局主要依据银行本外币合并的实收资本、营运资金或外汇净资产规模等为银行核定指标。外汇局可参考银行上年度对外担保履约和对外担保合规情况、执行外汇管理规定考核情况、当年度业务发展计划，以及当年度国家国际收支状况和政策调控需要等进行相应调整。  七、单家银行的指标原则上不得超过其本外币合并的实收资本或营运资金的50%，或者其外汇净资产数额。  八、银行申请年度指标，需提交以下材料：  （一） 申请报告以及《境内机构提供对外担保余额指标申请表》（见附件2）；  （二）上年度合并的资产负债表和损益表，以及外汇资金来源及运用情况表（如系初次申请，还需提供金融业务许可证、营业执照复印件）；  （三）上年度对外担保业务及合规情况（新成立银行除外）；  （四）本年度的业务开展计划；  （五）外汇局要求的其他材料。  九、实行余额管理的境内银行，其指标可以由该银行直接使用，也可以分解给该银行的境内分支机构（包括对指标实行集中管理、在境内没有设立法人机构的外国银行分支行）使用。  十、银行提供融资性对外担保，应严格控制在外汇局核定的指标范围内，被担保人不受与境内机构的股权关系、净资产比例和盈利状况等限制，但应符合国家有关担保等法律法规以及行业监管部门的相关管理规定。  十一、银行提供非融资性对外担保，其被担保人或受益人至少有一方应为在境内依法注册成立的法人，或至少有一方应为由境内机构按照规定在境外设立、持股或间接持股的机构。  十二、银行总行或对指标实行集中管理的主报告行应及时汇总本行全部对外担保情况，并于每月初5个工作日内向所在地外汇局办理对外担保定期备案手续，填报《境内银行对外担保汇总备案表》、《境内银行新签约融资性对外担保逐笔备案表》和《境内银行融资性对外担保履约逐笔备案表》（见附件3（1）、（2）、（3））。银行按上述规定办理备案手续的，视同登记，外汇局不再为银行出具对外担保登记证明文件。  以银行境内分支机构名义提供的对外担保，该分支机构也应当按上述要求向所在地外汇局报送相关数据，但不纳入外汇局系统对外担保数据统计。  银行在指标内提供的融资性对外担保，不以外汇局备案为生效要件。超出指标擅自提供对外担保，按照《办法》等规定处理。  十三、境内非银行金融机构和企业提供对外担保，应向外汇局逐笔申请核准。对外担保业务笔数较多、内部管理规范的非银行金融机构和企业（包括外商独资企业），其提供对外担保（包括融资性和非融资性担保），可参照本通知第五、八条规定的程序，以法人为主体向外汇局申请核定余额指标。在核定的指标范围内，境内非银行金融机构和企业提供对外担保，无需向外汇局逐笔申请核准。  （一）担保人为非银行金融机构时，其指标核定依据参照本通知第六、七条办理。  （二）担保人为企业时，其净资产与总资产的比例原则上不低于15％，外汇局为企业核定的余额指标或逐笔核准的对外担保余额不得超过其净资产的50％。  十四、非银行金融机构和企业提供对外担保应当遵守下列规定：  （一）非银行金融机构和企业提供对外担保，被担保人应当符合以下条件：  1、担保人为非银行金融机构时，被担保人须为在境内依法注册成立的法人或者境内机构按照规定在境外设立、持股或间接持股的机构。  担保人为企业时，被担保人须为担保人按照规定程序在境内外设立、持股或间接持股的企业。  2、被担保人净资产数额应当为正值。  3、被担保人最近三年内至少有一年实现盈利。如被担保人从事资源开发类等长期项目的，则最近五年内至少有一年实现盈利。被担保人成立后不满三年（一般企业）或五年（资源开发类企业）的，无盈利强制性要求。  境内房地产开发商为非居民房屋按揭贷款向境内银行提供的回购担保不受本项规定的限制。  （二）实行余额管理的非银行金融机构和企业如提供属于下列情形的对外担保，须逐笔报外汇局核准：  1、拟提供的对外担保，在指标规模、净资产数额以及盈利条件等方面不符合本通知及相关规定的，应经所在地外汇分局逐笔报国家外汇管理局核准。  2、担保标的为融资性合同项下的债务偿还义务，被担保人融资目的用于收购境外企业（目标公司）的股权；或者被担保人为境外企业（目标公司）股权转让合同项下的股权受让方（付款方），担保标的为股权转让合同项下股权转让款支付义务的，应报担保人所在地外汇分局核准，且担保人应提供国家境外投资主管部门对相关企业（被担保人或其关联企业）在境外参与项目投资或收购的批准文件（相关操作指引见附件4）。  经外汇局逐笔核准的对外担保纳入指标控制范围。指标不足的，外汇局在逐笔核准时同时调整其指标。  （三）未实行余额管理的外商独资企业，应参照一般企业的管理原则办理对外担保逐笔核准、逐笔登记等相关手续。  （四）非银行金融机构和企业应在对外担保合同签约后15日内，到所在地外汇局办理对外担保逐笔登记手续。对于实行余额管理的对外担保，所在地外汇局应按照相关规定对除担保人自身以外的其他资格条件进行审核，并出具对外担保登记证明文件。  十五、境内机构对外担保发生履约时，应按照以下规定办理有关履约手续：  （一）银行提供融资性和非融资性对外担保，若发生对外履约，可自行办理对外担保履约项下对外支付。  其对外担保履约资金可以来源于自身提供的外汇垫款、反担保人以外汇或人民币形式交存的保证金，或者发生债务违约后反担保人支付的款项。  非银行金融机构和企业发生对外担保履约，须向所在地外汇局逐笔申请核准，其办理对外担保履约时可以购汇。  （二）银行或非银行金融机构作为担保人时，其反担保人能够主动履行反担保付款义务的，反担保人可凭担保履约证明文件在银行直接办理购汇或支付手续，担保人自行办理相关外汇资金的入账。对外担保项下债务人主动履行对担保人还款义务的，债务人、担保人可自行办理各自的付款、收款手续。  债务人或反担保人由于各种原因不能主动履行还款、履约义务的，担保人以合法手段从债务人或反担保人清收的人民币资金，可参照银行代债务人结售汇相关规定办理购汇。  （三）企业作为担保人或第（二）项所指反担保人的，其向债务人追偿所得资金为外汇的，经外汇局核准后可以办理结汇。  十六、境内保险公司提供对外担保时，其数据报送和履约参照银行进行管理，即对外担保履约不需要外汇局核准，并按照第十二条实行对外担保定期备案。  十七、境内机构提供对外担保，均适用以下规定：  （一）境内机构提供对外担保，应当符合国家担保法律、法规以及行业监管部门与担保业务有关的管理规定，并加强相关风险控制。  （二）境内机构提供对外担保，如被担保人为在境内、外设立的合资企业，其提供对外担保不受境内、外机构股权投资比例的限制。  （三）为境外投资企业提供融资性对外担保的，担保项下资金不得以借贷、股权投资或证券投资等形式直接或通过第三方间接调回境内使用。境内担保人或境外投资企业在境内的母公司应当监督被担保人取得的资金用于被担保人在境外的生产经营活动。  （四）境内机构提供非融资性对外担保，根据业务具体需要，在完整描述担保义务的前提下，可以不在合同中约定明确的担保金额和期限。在办理对外担保核准、登记、备案手续时，外汇局或担保人可将担保项下合同中与担保方付款义务关联度最高的金额和期限确定为担保项下相关履约义务的参考金额和期限，但担保人在担保项下的实际付款义务不受参考金额和期限的限制。  （五）对外担保项下债务金额不受担保人外汇收入规模的限制。  （六）除本通知另有规定外，境内机构应按照《办法》、《境内机构对外担保管理办法实施细则》（[97]汇政发字第10号，以下简称《细则》）及其它相关规定办理对外担保签约、登记、变更、履约以及注销手续。  （七）对外担保项下债权债务转让，应当符合外汇管理规定。  十八、境内机构为境内或境外机构（债务人）向其境外担保人提供的反担保，按对外担保进行管理，提供反担保的境内机构和作为被担保人的境内或境外机构须符合本通知规定。  境内机构按对外担保规定为境内或境外机构（债务人）提供对外担保时，其他境内机构为债务人向提供对外担保的境内机构提供反担保，不按对外担保进行管理，但需符合相关外汇管理规定。  十九、担保人对外提供抵押、质押等，应符合抵押、质押物主管部门的相关规定。  担保人为自身合法对外债务或其他对外付款义务提供对外抵押、质押等，不受对外担保相关资格条件的限制，不需要纳入指标管理或向外汇局申请逐笔核准，但应到所在地外汇局办理对外担保定期备案或逐笔登记。若发生对外担保履约，非银行金融机构和企业应向外汇局申请逐笔核准。  担保人为第三方债务提供抵押、质押，除有特殊规定外，在资格、条件方面适用与第三方保证相同的外汇管理规定。  二十、外汇局应对境内机构对外担保业务进行监督检查。对擅自提供对外担保、超过核定指标提供对外担保或不按本通知等相关规定办理对外担保业务的，外汇局可视情节采取核减当年指标、从余额管理改为逐笔核准方式等措施，并依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及其他相关规定予以处罚。情节严重的，按规定暂停其对外担保业务。  二十一、各外汇分局接到本通知后，应尽快转发辖内中心支局和金融机构。  二十二、本通知自文发之日起施行。《办法》第五条第一款、《细则》第二十一条自本通知发布之日起停止执行。2005年8月16日公布的《国家外汇管理局关于调整境内银行为境外投资企业提供融资性对外担保管理方式的通知》（汇发[2005]61号）等相关规范性文件同时废止（详见附件5）。国家外汇管理局发布的其他法规与本通知有关内容不一致的，以本通知规定为准。  附件一：《\*\*\*\*年对外担保余额指标需求表》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730191352621.xls>  附件二：《境内机构提供对外担保余额指标申请表》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730191258141.doc>  附件三：《境内银行对外担保汇总备案表》、《境内银行新签约融资性对外担保逐笔备案表》、《境内银行融资性对外担保履约逐笔备案表》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730191446098.xls>  附件四：《境内机构提供对外担保逐笔核准申请表》、《境内机构提供对外担保逐笔核准操作指引》（略）  附件五：《对外担保废止文件清单》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730192329002.doc> |